

외화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서(외화가상계좌용)

(주)하나은행 _____ 지점(이하 "은행"이라 한다.)과 _____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.)는 "외화등록금 수납대행계약"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계약은 "학교"가 부과하는 입학금, 수업료, 학생회비 등 각종 외화납부금(이하 "외화등록금" 이라 한다)을 "은행"이 수납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 2 조 (업무의 범위)

이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금융서비스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"학교"의 학생이 "은행"의 각종 전자금융채널 및 지점창구에서 외화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수납 업무
2. "학교"의 학생요청에 의하여 "학교"에서 학생에게 부여한 "학교"의 외화등록금 입금전용계좌 (이하 "외화가상계좌"라 한다.)에 입금된 자금을 "은행"이 제4조에서 지정한 모계좌 (이하 '모계좌'라 한다.)에 입금하는 업무 와 거래 명세의 전송업무

제 3 조(업무처리 시간)

외화등록금 수납은 창구업무의 경우 "은행"의 영업시간 이내로 하며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"은행"의 동 업무 이용시간 범위내로 한다.

제 4 조(모계좌의 지정)

"학교" 는 "은행"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 모계좌인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.

입금모계좌는 외화보통예금에 한하며, 외화보통예금에 입금 가능한 통화로만 입금가능하다.

구분	예금과목	계좌번호	예금주
입금 모계좌	외화보통예금		

- 외화보통예금 예수가능 통화 (11개) : USD,JPY,EUR,GBP,CHF,CAD,AUD,NZD,HKD,SGD,CNY

제 5 조(외화가상계좌 입금업무 처리)

- ① 외화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자원은 전신환등 즉시 출금이 가능한 외화자금만 가능하며, 현금화 기간이 필요한 외화수표등은 입금 가능 수단에서 제외한다.
- ② "은행"은 "학교"로 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"학교"의 외화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"학교"가 미리 정한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.
다만, "외국환거래규정"등에 의해 별도의 확인을 요하는 거래는 동 확인 절차를 거친 후 "은행"의 거래 영업점을 통해 수작업 이체 처리한다.
- ③ "은행"은 "학교"의 외화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전산망에 의하여 "학교"에 전송 또는 조회 가능하게 지원한다.
- ④ 외화가상계좌를 통해 "입금모계좌"에 입금된 내역은 "외국환거래규정"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등 해당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입금처리의 예외)

“은행”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화가상계좌 또는 모계좌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.

제 7 조(거래내용의 확인)

- ① “은행”과 “학교”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“은행”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와 확인사항 중 “은행”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결과와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, 처리결과 전송 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“학교”에게 별도 통지한다.

제 8 조 (거래의 취소)

“은행”이 전산처리한 내역 중 “은행”의 전산시스템 오류, 이중입금이나 오조작 등에 따른 오류에 한하여 “은행”은 “학교”에게 동 거래의 취소 및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학교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수수료)

- ① 외화등록금 수납이체와 관련된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한다.
다만, “학교”의 학생이 국내외화이체망을 이용하여 외화가상계좌에 입금할 때에는 국내외화이체 수수료는 “학교”의 학생이 부담한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타 부가서비스를 “은행”과 “학교”가 각각 추가 요청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합의하여 적용하기로 한다.
- ③ 서비스이용수수료 이외의 외국환 관련 제 수수료는 “은행”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.

제 10 조 (효력 및 계약기간)

- ①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
- ② 이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제 11 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전산운용)

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“은행”와 “학교”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3 조(기밀유지) “은행”와 “학교”는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

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② 기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.

제 14 조 (책임)

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 등의 경우에는 당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

제 15 조(준용사항)

본 전자금융 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외화가상계좌 및 입금 모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“은행”의 수신거래관련 제기본약관,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, 외환거래 기본약관과 관련 거래에 대한 제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.

제 16 조 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이 계약업무 진행중 감독기관(유관기관 포함)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관련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“은행”의 사유가 아닌 타행등의 이의제기로 인한 금융공동망 사용불능 등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 “은행”은 그 책임을 면한다

제 17 조(관할법원)

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“ 학교”와 “은행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	년	월	일
고객명(학교명)			(인)

(주) 하나은행	지점장 (인)
----------	---------

